

임실군의회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임실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9일

임실군의회 의장

(사인)

(직인)

장종민



임실군의회 예규 제2호

임실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임실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1조제2항 각 호 및 제1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임실군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임실군의회 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임실군의회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마련
4. 성희롱 등의 피해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등 2차 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임실군의회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 등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 등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 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 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임실군의회의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등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 등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 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 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구성원의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고충상담원은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처리 관련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그 밖의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신청서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등 및 2차 피

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7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고충상담) ①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 또는 피해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계획(교육시기,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자 등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7. 그 밖에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의원 및 의회사무과 고위직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

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의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자에게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 등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피해자 등이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 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예단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
7.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등의 입장에서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 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를 원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성희롱 등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사·복무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감사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자동 해산한다.

⑦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조사 등 결과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 의장은 조사 및 심의 결과 피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 등 고충상담 과정이나 조사과정 또는 징계 등 제재조치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 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① 의장은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 등 예방교육, 성희롱 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식조사,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의장은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상담 및 사건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 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부서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신청서					
접 수 일	20 . . .		담 당 자	(서명)	
당 사 자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연락처			
	대 리 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연락처			
	행 위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연락처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 구 사 항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중지 []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재발방지 조치 []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5 기타 ()				
위 신청인은 「임실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제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의회 성폭력 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 귀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임실군의회 의장 (인)